

## 금융투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윤 계 섭\*\*

.....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 같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교육을 널리 실시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가 미미하다. 금융교육은 이제 지식을 중심으로 한 이해력 교육에서 금융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일부 학자들이 금융 이해력 교육을 반대하고 있으나 금융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는 지식이 없어 금융자문조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금융 문맹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정부기관들과 민간기관이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졸업 이후에도 평생교육으로 해야 할 것이다. 노령화, 경기 불안, 금융상품의 개발 등으로 금융교육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금융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서 금융투자능력지수(FICI)가 개발되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방 수단으로서 금융교육은 국민전체의 금융복리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

### I. 들어가며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특히 금융상품개발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인들의 금융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간이 잘 살려는 욕구는 경제가 발전하기 이전부터 있어 왔겠지만 경제활동이 복잡해지고 개인들의 금융의사결정에 대해 잘 알고 못 아는 것이 개인의 미래 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미국상원은 미국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금융능력(Financial Capability)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sup>1)</sup>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2008년에 나타난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적 불황은 세계 각국에서 금융교육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금융위기에서 정책대안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창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개혁 법안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청을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sup>2)</sup>

이제 금융교육은 단순히 금융지식의 보급만이 아니고 그 지식을 현실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해력(literacy)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해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를 토대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뜻에서 금융능력개발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금융이해력교육이라고 하면 금융지식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국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교육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함께 복잡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야 하므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개인의 보유자산의 운용에 관한 기본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신용과 은행, 증권, 보험, 세금, 상속 증여, 퇴직 계획 등 모든 금융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매우 광범하다.

금융능력개발교육은 이러한 기본지식 외에 개인이 자산운용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금융지식은 직접 활용하는 금융행위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금융능력개발교육이 성공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자신이 가진 금융자산을 가장 효율성 있게 투자 운영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 면에서 개인 복리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학에서 재무관리나 금융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 전공할 사람들조차도 금융환경변화와 계속 변화하는 금융상품 개발 실태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윌리스(L. E. Willis) 교수는 아예 금융능력개발교육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윌리스 교수의 반대이론에 대하여 외국과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교육

1) 미국 상원, S. Res. 126 110차 회의(2007. 3).

2) *The NY Times*,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2010. 7. 23.

의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전략방안을 설정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나아가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 측정을 위한 금융투자능력지수 개발을 위한 기본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금융 교육의 발전 현황

### 1. 금융 교육의 성격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금융교육을 해야 한다는 논의는 미국의 경우에 1939년에 시작하였는데 “경제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는 나라(Nation of Economic Literacy)”를 만들자고 주장했다.<sup>3)</sup>

이후 미국의 경우는 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계층에 금융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그리고 금융이해력 교육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08년에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늘날 개인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 세무, 퇴직 계획 등 모든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다양한 발전과 금융기술의 발달로 더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증가하여 이를 선택해서 투자하기에 금융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금융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전용 웹 사이트([www.financial-education.org](http://www.financial-education.org))를 개설하였으며, 여기에서 세계 각국이 많은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EC에서는 금융교육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연구그룹을 구성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 각 국가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서 인도까지도 금융소비자 교육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3) Leland J. Gordon, Next Steps in Consumer Education 65. Econ. J. 403. 1940.

4)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17권 31호, 2008. 8.

이 장에서는 금융시장의 발달과 함께 금융교육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세계주요국의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능력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1) 금융능력의 개발

금융소비자 교육의 목적으로서 과거 금융에 대한 지식확보로부터 발전한 금융능력의 개발에 대해서 아일랜드의 소비자 보호원(National Consumer Agency)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5)</sup>

금융능력이란 광범한 개념으로서 금융소비자를 둘러싼 금융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으로서 금융 행위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금융능력을 가진 소비자는 금융 지식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자문을 구할 때를 알고 금융자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금융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평가를 내려서 금융상품의 선택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영국의 금융감독원(FSA)에서는 금융능력을 정보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리고 금융자산의 사용이나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6)</sup>

이러한 금융능력은 금융지식, 금융기능, 금융태도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7)</sup>

첫째, 금융지식이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이다. 이는 일상에서 금융 문제를 다루고 자문이 필요한 때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지식은 금융환경과 이론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하며 소비자 자신은 금융지식의 범위와 깊이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또한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와 자문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5) National Consumer Agency, Introduction to financial capability, www.financialcapability.ie, HM Treasury 2007.

6) FSA, Measuring financial capability; an exploratory study (2005).

윤계섭 · 김근수 · 변진호, 금융능력개발을 위한 전략과 방안, 서울대 경영연구소, 2006. 2, p. 22.

7) Basic Skills Agency, Adult financial capability framework, 2004.

윤계섭 · 김근수 · 변진호, 앞의 보고서, pp. 114-117.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필요한 금융관련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금융지식을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금융기능(financial skills)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금융정보의 기록, 보존과 금융설계 및 금융정보평가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고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 자신의 태도와 의지가 필요하다. 즉, 금융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자금, 시간, 노력을 투자할 의지와 함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정하고 이를 실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금융능력의 수준과 정도는 소비자 자신의 보유자금, 수입 등 경제적 여건과 연령, 건강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 복리를 누리기 위해서 현대의 금융소비자는 금융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금융지식과 기능,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준에 따라 금융복리를 누리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 2) 금융능력 개발의 3요소

### ① 금융 교육

금융지식의 기반으로서 금융교육은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전반에 대하여 제도나 법규 등에 관해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에서 강의식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것조차 모든 학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금융소비자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적 교훈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 수준에 알맞게 작성된 교재, 설명서와 함께 시기에 맞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지식을 강의, 방송 등 다양한 전달 수단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강의뿐 아니라 사례 토의 등을 통해서 금융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금융 정보

금융교육이 정적인 지식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금융정보는 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계속하여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에 관해서 금융소비자 수준에 맞는 금융용어에 대한 해설,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려면 금융교육에

서 얻은 금융지식이 기반이 될 것이다.

### ③ 개인 상담

금융교육이나 금융정보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일반적이거나 표준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은 과거에 받은 교육이나 정보수준만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금융전문가와 금융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직원들도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금융소비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인 상담은 금융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이상의 세 가지 요인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능력개발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것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교육이다. 만약 이러한 교육이 안되어 있으면 정보를 받아도 이해할 수 없고 개인 상담을 해도 이해하지 못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2. 금융소비자교육의 진행 실태

### 1) 미국

금융소비자교육을 일찍 시작한 미국은 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었다. 경제교육을 위해서 1949년에 설립된 미국경제학 교육협의회(National Council on Economics Education; NCEE)는 교육계, 재계, 노동단체로 구성되었다. 이 기관은 경제금융 이해력을 강조하고 주식투자 게임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 초·중·고·대학까지 학교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한 Jump\$start는 민간의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데 주요 교육프로그램 500종 이상을 제공해주며 금융이해력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국금융교육기금(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 NEFE)도 안정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교육을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퇴직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는 1958년에 결성되어 50세 이상의 회원이 3,500만 명이나 된다. 재산관리 프로그램이 특색이다. 개인투자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AAI)는 1978년에 설립되어 개인이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유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복리연구소(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EBRI), 저축교육협의회(American Savings Education Council; ASEC), 증권업협회(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등이 투자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정부(재무부, 교육부, 노동부,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이해력 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Education Commission 2010; FLE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금융소비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에 통과된 금융개혁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AFA)이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금융소비자 교육이 중요한 전략으로 고려되고 있다.

## 2) 영국

영국은 미국보다 뒤늦게 금융소비자 교육을 시작했지만 정부와 민간단체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국이다.

영국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가 금융서비스시장법률(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2000)에 의해서 교육계획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4대 목표로서 금융소비자 교육을 금융시스템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범죄를 방지하며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이해력에서 금융능력 개발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sup>8)</sup> 영국정부는 재무부, 노동 연금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등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금융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기구로서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개인금융교육회(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 PFEG)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능력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교과과정에서 금융교육에 관한 지도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이밖에 투자운용협회(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 IMA), 자금관리위원회(Money Management Council; MMC) 등이 금융투자에 관한 지식 함양과 보유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게 온·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있다.

8) 윤계섭·김근수·변진호, 앞의 보고서, 2006. 2, pp. 70.

2010년에는 FSMA법에 따라 소비자 금융교육조직(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 CFEB)을 만들어 소비자의 자산관리를 돕게 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금융능력 향상을 측정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각종 계획을 실시하는데 정부, 비영리단체 등 각 기관이 서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각 계층별로 금융능력을 개발시키는 독립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이나 청소년 교육에 주력해서 금융소외를 해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 3) 캐나다

2001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FCAC)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금융감독청과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하고 금융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 기관에서는 금융기관의 각종 정보를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소통증진을 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sup>9)</sup>

### 4) 일본

일본은 2001년부터 금융청, 문부과학성, 내각부(행정자치부)가 일본은행, 은행 및 증권회사들, 기타 금융기관, 비영리단체들이 금융투자 교육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은 금융홍보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있지만 노무라증권, 닛코증권과 같이 각 회사가 자사 마케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서 비영리단체의 활약이 영미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다.

### 5)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KDI 등이 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금융교실, 취약계층, 금융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과과정의 변경됨에 따라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이 줄어들고 특히 금융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이다. 새로운 교과과정의 도입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가 부족하여 현실

---

9) [www.FCAC.acts.gc.ca](http://www.FCAC.acts.gc.ca)



과 괴리가 심각하다.

이에 비해서 민간기관으로서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증권회사,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회사들의 투자금융교육이 활발하다. 최근에 개인금융(PB)의 발전으로 재무자문가(FP)와 투자자들 사이에 개별 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 약하다. 앞으로 미소금융(micro capital) 등 소외계층 금융이 활발해지면 신용불량자와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도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정부의 의욕에 비해서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부족하고 각 기관이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학력별, 수준별, 계층별 금융교육교재가 개발되고 전문 강의담당자가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하반기에 제안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sup>10)</sup>

〈표 1〉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의 금융교육 비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교육 목표	금융지식의 향상		금융이해력과 실행 행위에 관심	
교육 내용	무엇이 있나 다양한 지식 중심(강의식)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적, 구체적, 참여중심	
교육 주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 한국은행, KDI, 민간기업	일본은행, 민간기업	비영리기관 중심, SEC	FSA와 민간기관 협력
교육 대상	청소년, 일반인 교육		청소년, 일반, 직업별 대상에 따라 전문 교육	
정부 참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일본은행, 금융청	재무부, SEC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 재무부, FSA
교육 체계	정해진 체계없음		분산형, 일부 학교 정규과목	집중형, 기구간 긴밀한 협조
교육 효과	금융지식의 축적		금융행위의 합리적 변화	

자료: 윤계섭 외 2인, 금융능력 개발을 위한 전략과 방안, 2006. 2에서 현재에 맞춰 수정.

10) 한국경제신문, 금융소비자보호법 추진, 2010. 6. 30.

〈표 1〉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4개국의 금융교육의 특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 6) 국제기관의 공조

### ① OECD의 금융 교육

OECD는 개인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회원국 간의 금융교육제도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자료조사를 위해서 국제금융교육기구(International Gateway for Financial Education; IGFE)를 2008년에 설립하였다. 이 기구에서는 회원국 간의 금융정보와 연구, 뉴스 등을 공급하고 금융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sup>11)</sup>

### ② 아시아 투자자 교육 포럼

2010년 3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주도로 아시아 투자자 교육 포럼(Asia Forum for Investor Education; AFIE)이 창설되었다. 일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20개국의 금융투자협회, 증권거래소 및 각종 규제감독기구 등 총 30개 투자자교육 관련기관들이 참가했다.

이는 아시아 각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서 투자자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각 국가 간 정보교환과 나아가서 아시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 조직은 앞으로 가입국가끼리 투자자 교육 전략을 개발하는데 크게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sup>12)</sup>

### ③ G20 금융 소외 해소 전문가 그룹(Financial Inclusion Expert Group; FIEG)

G20 국가 대표들이 모여 금융이해력과 금융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 교환을 위해 2009년에 구성되었으며, 소외계층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빈곤층,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 등 과거 금융소비자 대상이 안 되었던 모든 계층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략을 국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미소금융(micro capital)과 같은 금융기관도 대상이 되어, 우선 2020년까지 멕시코가 시험대상이 되었다. 민간기관, 정부, 금융산업이 서로 연계되어 금융소비자를 보호

11) [www.oecd.org/dataoecd/8/28/44409678.pdf](http://www.oecd.org/dataoecd/8/28/44409678.pdf), 각주 4 참조.

12) 한국투자금융협회, 아시아 투자자 교육 포럼, 2010. 3.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존립 의의가 있다.<sup>13)</sup>

### III. 금융능력개발 교육에 대한 반대 이론

금융교육에서 한 단계 발전한 금융이해력 교육은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지식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비해서 미국이나 영국은 실용성을 보다 강조하여 금융지식을 활용해서 보유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교육 방법이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데 비해서 미국이나 영국은 게임, 1:1 상담, 사례연구 등을 통해서 실증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sup>14)</sup>

금융이해력 교육이 기대하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 면이나 이해력 향상 측면에서 비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윌리스 교수는 광범한 실증사례와 다른 논문을 인용하여 금융능력개발 교육을 반대하고 있다.<sup>15)</sup> 그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금융전문가가 되기 보다 금융전문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도 발전하는 금융상품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로 미루어 매우 타당한 반대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반대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능력개발교육이 나아가야 할 전략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윌리스 교수는 경제교육의 일부로서 금융이해력 교육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지지가 없다고 하였다.<sup>16)</sup> 금융이해력과 복잡하게 발전하는 금융상품 평가는 괴리가 심해서 더구나 금융의사결정을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금융이해력 교육이 어렵고 둘째,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에 대한 투자보다는 다른 유익한 일로 대신할 수 있고(기회비용) 셋째, 선부른 교육으로 인해서 나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며 넷째, 금융시장의 효과적인 규제보다 금융소비자 자신에게 책임

13) Center for Financial Inclusion, [www.microcapital.org](http://www.microcapital.org)

14) 윤계섭 · 김근수 · 변진호, 앞의 보고서, pp. 102-106.

15) Lauren E. Willis; Against Financial-Literacy Education 94 Iowa L Rev(2008), [www.law.uiowa.edu/documents/ilr/willis](http://www.law.uiowa.edu/documents/ilr/willis)

16) Lauren E. Willis, Evidence and Ideology i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46, San Diego I. Rev., 2009. 5.

을 돌리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7)</sup> 결과적으로 금융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수단 개발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능력개발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금융상품의 다양한 발전에 따라 상품 종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판매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일어나게 된다. 금융소비자가 교육에서 배운 지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뒤떨어지게 되며 새로운 금융상품이 계속 등장하게 되어 이를 평가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공학의 발전과 아울러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은 상품 설명만 수 십 페이지에 이를 정도이고 운용 보고서도 문장이나 단어가 난해하여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내재적 위험이 금융소비자에게 잘 인식되지 않고 이를 판매하는 금융기관 자체도 잘 모르는 현실에서 일부에서는 유행상품처럼 상품주기가 짧아져 금융소비자를 당황하게 한다.

금융상품은 계속 변화하는데 금융 행위의 의사결정은 가끔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 교육은 다른 유형의 기능교육과 구분된다. 금융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하여야 하는데 금융전문가들조차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경제전문가와 일기예보 전문가를 비교하는 우화로 일기예보 전문가는 비가 오는지, 맑아서 해가 떴는지, 현재 일기는 알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는 현재 날씨조차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금융투자기법에 있어서 많은 기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의사결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선택한 의사결정의 비용과 효과를 고려해서 정교한 수리적 모형에 대입하는 전문가와 평범한 개인을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전문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 잡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업계는 항상 개인 금융지식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금융교육은 도달하기 어렵고 움직이는 목표를 뒤쫓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하였다.<sup>18)</sup>

17) L. E. Willis, *Against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p. 198.

18) L. E. Willis, *전계논문*, p. 216, Chris Sanchirico에게 감사 표시.

② 정보 이해 능력의 한계

개인이 금융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풍부한 이해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금융상품의 계속적인 발전은 금융전문가라 할지라도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니거나 공부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개인이 자신의 미래 수입과 저축, 건강상태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이자율, 환율, 물가상승률, 시장 상황(호경기, 불경기 등) 등을 예측해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금융 용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어가 계속 나오고 특히 영어 약자가 많아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③ 행동재무학적 문제

윌리스 교수는 현대투자이론 발전에 따른 행동재무학적인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의 심리를 고려하여 금융의사결정 결과가 금융소비자의 감정에 따라 영향이 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선택은 물질적이나 감정적으로 커다란 부정적 효과나 긍정적 효과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인 금융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잠재적인 비용이나 효과를 고려하기는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반응을 서로 교환하면서 지배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금융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 감정적 자원이 제한 될 수 있다.<sup>19)</sup> 그 결과 금융소비자들은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지만 모순되게도 그 중요성 때문에 자신의 복리를 높이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

더구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의사결정에 있어서 피하고 싶은 불황이나 질병, 노화, 죽음에 관한 주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러한 위험들의 확률, 시기 및 잠재적 비용을 평가하고 상품화하기 어려운 보호대상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평가해야 한다.<sup>20)</sup>

이러한 사실은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리적 과정, 즉 공포감이나 근심 또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의사결정능력을 감소시킨다. 이

19) William D. Wells, The Perils of N=1, 28 J. Consumer Res. 494, 496 (2001).

L. E. Wills는 연구자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장되었을 것으로 주장.

20) Russell Korobkin, Bounded Rationality Standard Form Contracts and Unconscionability, 70, U. CHI. I. REV 2003, p. 1230-31.

러한 심정을 피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낙관하거나 과신을 하게 된다.

특히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은 “지식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투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투자에 성공할 것이라는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를 무시하곤 한다. 금융이해력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 지나친 낙관을 하지 않도록 환상을 줄여주어야 한다.<sup>21)</sup>

#### IV. 금융교육의 효과에 대한 우려

미국의 많은 주(조지아, 아이다호,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미주리, 사우스 다코다, 유타 등)에서는 학생들이 개인 금융이나 유사한 과목을 필수로 듣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sup>22)</sup>

또한 많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은 개인 자신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환불능위험에 처한 신용카드 소지자 6,500명에게 무료 온라인 금융이해력 과정을 개설했으나 단지 2명만이 이 과정을 이수했다고 한다.<sup>23)</sup>

또한 윌리스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금융이해력 교육을 제공할 경제적 동기가 없다고 하며 세 가지로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첫째, 금융교육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엄청난데 비해서 예상수익이 낮다. 이러한 교육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거나 회사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sup>24)</sup> 보다 저렴한 프로그램으로도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금융교육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회사만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21) Josh Wiener & Tabitha Doescher, A Framework for Promoting Retirement Savings, 42, Jn 상계서, 137-141, 2008.

22)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Survey of the States: Economic, Personal Finance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our Nation's Schools, 2007.

23) Amy Brown, Kimberly Gartner, CTR, For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Early Intervention and Credit Card Holders 6-7, 2007.

L. E. Willis, 전계논문, pp. 204-208.

24) Sandra Braunstein, Carolyn Welch, Financial Literacy: An overview of practice, Research and policy 88, Fed. Res. Bull 445-448, 2002.

다른 회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리적 동기가 없다.

셋째, 개인금융상품의 판매업자는 금융이해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때문에 이들이 지급하는 연체수수료나 채무추심에 의해서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금융이해력 교육은 금융회사가 실시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보다 큰 문제는 3시간 정도 금융이해력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금융상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과도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다.<sup>25)</sup> 이는 금융이해력 교육의 역설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소비자의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이해력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안 배운 것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상품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금융이해력 교육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의사결정에서 초래된 잘못된 결과로 금융소비자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게 된다는 점이다.

윌리스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영국, 미국, 최근에는 우리나라<sup>27)</sup>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V. 금융 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윌리스 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금융교육의 효과가 부실함을 설명하고 있어 금융교육을 강화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논리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들은 환자가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되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가서 병을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자문가(Financial Advisor)나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에게 보유자산관리와 재무의사결정을 맡기라는 것이다. 금융교육을

25) Stoker & Polansky, 전제논문, 176.

26) Shlomo Benartzi & Richard Thaler, Naïve Diversification Strategies in Defined Contribution Savings Plans, 91 AER 79, 96 (2001).

27) 투자자 보호 재단 세미나, “금융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 2010. 6. 25.

받아서 능력을 키우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해력 능력은 키우지도 못한 채 더 나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될 경우 책임을 금융소비자 자신에게 지워서 비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재무의사결정을 하는데 금융 전문가를 활용하는 편이 노동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8)</sup>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08년에 18.4%에 불과하였지만 금융투자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82.6%가 되었다. 2010년에는 금융투자 교육을 받은 경험은 18.1%로 2008년과 비슷하지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74.7%로 약간 줄었다.<sup>29)</sup> 이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투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2008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압도적 다수임에는 틀림이 없다.

금융투자 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늘어나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경기변동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연금수혜자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연금제도도 불안해지면서 민간 연금이나 민간 건강보험이 늘어나 개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편, 금융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각종 파생상품과 복합증권(hybrid securities)이 개발되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어 남유럽 경제위기 등 경기가 불안정해져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복잡한 대출과 실효금리의 상승으로 개인들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신용불량자나 저소득 계층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금융교육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초·중·고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규교과목에 금융교육 시간이 거의 없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금융교육은 가정교육부터 학교교육까지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데 이는

28) L. E. Willis, 앞의 보고서, p. 1.

29) 윤계섭·김근수·변진호, 앞의 보고서(2010). 코리아리서치에서 1,000명에게 인터넷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임.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이해력과 금융능력을 높여서 과소비를 방지하고 가계부채를 줄여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합리적 금융교육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이는 금융소비자 개인은 물론 국가에게도 사회적 비용을 줄여 경제발전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OECD는 물론 G20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기구와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 국가는 물론 국제적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윌리스 교수가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가 금융교육을 받고 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재무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재무 설계사나 금융 자문을 만나려고 하더라도 우린 어느 전문가가 좋은지 고를 줄 알아야 한다. 의사도 해당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며 이를 고르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재산운용을 맡기는 금융전문가도 당연히 고르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금융이해력 교육조차 못 받았다면 용어를 몰라서 전문가와 서로 상담이 되지 않고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설명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재무 설계사가 잘못했을 때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이나 금융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금융이해력 교육은 금융지식 중심인데 이에 불만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금융능력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1:1 상담 등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최근 세계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은 금융시장을 개선하는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금융상품의 단순화나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자신이 금융지식을 늘려서 자신을 보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금융소비자의 금융교육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가 금융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평생교육으로 체계화시키고 있다.

금융소비자 교육을 정부와 산하 국가기관, 각종 민간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 효과가 미진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각 기관들이 각자 산발적으로 교육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교육을 중복해서 하고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

한 분석이 없이 무차별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금융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 초·중·고·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은 물론 학교를 졸업한 장년과 노년까지 포함한 평생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테스트는 지수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비교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서 이를 국가 간에 비교하고 성공한 국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을 하는 미국보다 관계와 민간이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활동하는 영국의 경우가 우리에게 알맞다고 생각된다.

최근 재무관리나 금융경제학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행동재무학 또는 행동경제학이론을 금융교육에도 접목시켜야 한다. 윌리스 교수의 논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주장의 많은 부분이 행동경제학 이론과 연결되어 있다. 즉, 금융소비자의 심리적 영향을 강조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들이나 개인적인 성격차이, 개인금융 결정 시에 나타나는 편견들에 의해서 기존 재무이론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재무학이나 행동경제학은 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결과를 금융능력개발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다. 행동경제학 이론과 기존 금융이론의 차이를 수용해서 교육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VI. 금융 투자 능력 지수의 개발과 제안

금융투자능력지수(FICI, Finance and Investment Capability Index)는 금융투자 이해력과 함께 금융투자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투자 행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sup>30)</sup>

금융투자 이해력과 더불어 금융투자 행위를 평가해야 하는 이유는 금융투자 이해력을 증가시켰다고 해서 반드시 합리적 투자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31)</sup> 금융

30) 윤계섭·김근수·변진호, 금융투자능력지수 측정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금융투자협회, 2010. 7.

31) 윤계섭·김근수·변진호, 금융능력개발을 위한 전략과 방안, 서울대 경영연구소, 2006. 2.

능력개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금융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일정한 원칙 아래서 평가해보고 이를 지표로 만들어 기간별로, 지역별로, 국가별로 비교해 보는 것이 금융능력개발 교육의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투자능력 지수에는 금융투자에 관련된 이해력(지식)을 평가하는 금융이해력 지수(Financial Literacy Index)와 함께 투자자의 이해력을 평가하는 투자이해력 지수(ILI, Investment Literacy Index)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상황 적응 능력까지 평가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자 이해력 지수는 금융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금융지식과 금융의사결정 및 상품정보에 대한 문항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1) 저축과 투자의 이해 5문항 — 보유자금의 유동성, 안전한 투자방법,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장기투자의 수익성, 복리이자의 의미, 2) 신용과 부채에 관한 이해 3문항 — 신용정보의 확인, 대출심사와 신용기록, 대출이자율의 이해, 3) 재산관리의 이해 1문항 — 보험의 필요성, 4) 소득의 이해 — 가처분 소득에 대한 이해로 구성하였다.

투자이해력 지수는 합리적인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인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투자자의 재무상태가 다르므로 이를 조정해서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분야에서는 1) 주식과 채권의 기본지식 2문항 — 안정성과 수익성(주식과 채권), 주식투자에 대한 이해, 2) 증권펀드관련 제도 5문항 — ETF(상장지수펀드) 이해, 주식매매제도, 펀드판매제도, 펀드투자관련 설명, 증권세금제도, 3) 상품관련 지식 3문항 — 단기투자상품, 실적배당상품, 원금 보장형 펀드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수는 기준연도를 100으로 하고 주기적으로(예: 1년 또는 2년) 측정해서 금융소비자 교육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전략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지수개발 연구는 금융투자협회의 의뢰를 받아 필자와 김근수, 변진호 교수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는데 2005년의 연구와 2008년도의 설문조사를 거쳐 2010년에 다시 인터넷 설문조사를 거쳐서 이 지수를 개발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금융 및 투자지식 결정요인은 설문 응답자의 연령, 학력, 직업, 소득과 현재 투자여부이다. 이를 우리나라 성인의 일반 특성과 일치시켜 통제하였다. 위와 같이 5가지 요인을 특성요인으로 구분한 이유는 연령대에 따라 투자지식이 다르고, 학력이 높을수록 금

금융투자지식이 높으며 직업에 따라 이 지식과 행위가 달라질 수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투자 행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모두 고려해서 금융투자능력 점수를 산출하였다.<sup>32)</sup>

지금까지 금융이해력에 대한 평가는 미국의 점프 스타트(Jump Start) 등에서 개발한 지표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지식 측정에 국한했으나 금융투자 행위까지 측정함으로써 보완한 지표가 탄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투자 행위는 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투자지식이 높을수록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이 아직 증명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경우에도 금융능력개발 교육의 효과를 도외시한 채 다양한 교육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수개발과 조사를 통해서 금융능력개발 교육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sup>33)</sup>

이 연구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금융투자 행위에 대한 점수화에 따른 문제이다. 우선 투자자의 속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재정부담도(financial stress)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투자 행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득수준이 다름에 따라 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sup>34)</sup>

둘째, 투자이해력 문항의 난이도 조정이다. 금융투자 교육의 효과는 투자 이해력과 연결된 지식 측정인데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지수의 경우 난이도가 다르면 주기적으로 조사한 점수가 상이하게 되어 평가하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대표성을 가지는 문제 선정과 난이도의 조정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최근에 금융·재무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행동재무학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의 금융 재무이론이 투자자의 행동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심리적으로 연구하는 행동재무학은 기존 이론을 부정하거나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게 하

32) 윤계섭·김근수·변진호, 앞의 보고서(2010).

33) 윤계섭·김근수·변진호, 앞의 연구, p. 115.

34) 윤계섭·김근수·변진호, 앞의 연구, p. 117.

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설이나 통설도 재검토해야 되고 시행시기가 국가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행위와 관련된 투자이해력 지수에서는 행동재무학 이론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VI. 결론

금융교육이 지식을 중심으로 한 이해력 교육에서 금융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하는 교육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논리에서 일부 학계의 반론이 나와 마치 금융교육 무용론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또,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실에서<sup>35)</sup> 금융교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잘못된 금융교육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다행히 2010년 후반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 교육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게 시행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교육활동은 대부분 기관별로, 또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활동이 지금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따라서 전국 단위로 금융소비자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참여자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각 기관이 역할분담을 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이루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가자의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해서 중복 교육이 없고 학년으로 진학하듯이 급을 나누어 흥미를 잃지 않게 하고 각 협력기관들은 설립목적과 전문영역에 따라 전문화함으로써 자금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의 금융교육체계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교과과정 투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 중에서도 개

35) 미국 금융위기 직전에 부시(Bush) 대통령도 금융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Remarks by the President in Roundtable Interview with Business Reporters (2007. 8. 8), L. E. Willis 앞의 논문(2008) 각주 3.

36) L. E. Willis 자신도 금융이해력 교육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앞의 논문(2008) 결론.

인금융, 재무설계과목 등을 강의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능고사 이후 대학 입학시기까지의 공백기간을 활용한 교육에 평소에 듣지 못하던 개인재무설계 강의를 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정부기관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KDI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국가전략으로 체계화해서 각 민간기관과 협력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교육의 기본전략을 만들고, 이에 교과부가 금융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입시키고 각 기관별로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여 각 민간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종 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이 금융소비자의 행위에까지 영향을 주고 개선시켰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융투자능력지수(FICI)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아시아 투자자교육연맹(AFIE)에 참여한 국가끼리 교육 성과를 상호 비교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G20 국가의 금융교육 위원회에서 금융교육을 개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

금융교육이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만이 아닌 소외계층까지 포괄한 모든 계층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개선하고 금융복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윤계섭 · 김근수 · 변진호, 금융능력개발을 위한 전략과 방안, 서울대 경영연구소, 2006.

2.

윤계섭 · 김근수 · 변진호, 금융투자능력지수 측정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금융투자협회,

2010. 7.

투자자 보호 재단 세미나, “금융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 2010. 6. 25.

- 한국경제신문, 금융소비자보호법 추진, 2010. 6. 30.
-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17권 31호, 2008. 8.
- 한국투자금융협회, 아시아 투자자 교육 포럼, 2010. 3.
- The NY Times,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2010. 7. 23.
- Lauren E. Willis, Evidence and Ideology i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46. San Diego I. Rev., 2009. 5.
- Josh Wiener & Tabitha Doescher, A Framework for Promoting Retirement Savings, 42. Jn 상계서, 2008.
- Lauren E. Willis, Against Financial-Literacy Education, 94. Iowa. L. Rev (2008), [www.law.uiowa.edu/documents/ilr/willis](http://www.law.uiowa.edu/documents/ilr/willis).
- Amy Brown, Kimberly Gartner, CTR, For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Early Intervention and Credit Card Holders 6-7, 2007.
- National Consumer Agency, Introduction to financial capability, [www.financialcapability.ie](http://www.financialcapability.ie), HM Treasury 2007.
-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Survey of the States: Economic, Personal Finance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our Nation's Schools, 2007.
- FSA, Measuring financial capability; an exploratory study, 2005.
- Basic Skills Agency, Adult financial capability framework, 2004.
- Russell Korobkin, Bounded Rationality Standard Form Contracts and Unconscionability, 70. U. CHI. I. REV 2003.
- Sandra Braunstein, Carolyn Welch, Financial Literacy: An overview of practice, Research and policy 88, Fed. Res. Bull, 2002.
- Shlomo Benartzi & Richard Thaler, Naïve Diversification Strategies in Defined Contribution Savings Plans, 91 AER 79, 96 (2001).
- William D. Wells, The Perils of N=1, 28 J. Consumer Res. 494, 496 (2001).
- Leland J. Gordon, Next Steps in Consumer Education, 65. Econ. J. 403. 1940.

## Promoting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in Korea

Kesop Yun\*

Korea, like other countries, has a number of financial-literacy education programs for financial consumers, although the effectiveness of those is rather limited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administered separately by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now, should focus more on developing the financial capabilities of investors than on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the financial literacy.

Although some scholars are against financial education, Korea, where financial education is not offered in schools, seriously lack the knowledge necessary even for simple consultations on finance.

This is the reason why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a lifelong process continuing even after graduation from schools and involving the participation from the government and private agencies. Since time, effort, and cost is wasted without a proper evaluation on the financial education in Korea, regular assessments are necessar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FICI.

Financial education, as a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ool, should fulfill its purpose of increasing the overall financial welfare of Korean citizens and working as a social security net.

Keywords: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financial capability, personal finance education, FICI (Finance and Investment Capability Index)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